

2017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(1차)

결 재	담당	팀장	기획처장	위원장
				

확인	학교대표	교수대표	학생대표	전문위원 대표
				

1. 일 시 : 2017. 1. 3(화) 10:00분 ~ 10:38분

2. 장 소 : 대학본부 2층 교무회의실

3. 참석자 : 변○○ 위원장, 이○○ 학교대표위원, 박○○ 학교대표위원, 김○○ 학생 대표위원, 우○○ 학생대표위원, 이○○ 학생대표위원, 조○○ 교수대표위원, 성○○ 교수대표위원, 황○○ 외부전문가위원, 변○○ 외부전문가위원

4. 발언요지

1) (변○○ 위원장) 2017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고 위원 소개 및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함.

- 위원장이 외부전문가위원 변○○위원, 황○○위원, 학생대표위원 김○○위원, 우○○위원, 이○○위원, 교수대표위원 조○○위원, 성○○위원, 학교대표위원 이○○위원, 박○○위원, 마지막으로 위원장 본인소개 순으로 소개를 마쳤으며,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공평하게 위원회가 진행되도록 할 것임을 약속함.
-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정 및 행정사항에 대해 이○○ 학교대표위원에게 설명을 요청함.

2) (이○○ 학교대표위원) 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적근거, 회의 진행 및 절차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함.

- 고등교육법 제11조(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) ②항 및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여 위원회의 구성은 학교대표 3명, 학생대표 3명, 교수대표 2명, 외부전문가위원 2명 등 총 10명으로 적법하게 구성되었음.
- 회의진행에 대한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전년도 사례 등을 참고하면 모든 회의가 종료된 후 대학알리미(대학정보공시)에 공개하였으며, 회의록은 차기회의 시작 전에 참석위원 전체가 문제없음을 확인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진행된 것을 설명함.
- 금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도 동일하게 진행할 것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고 이에 모든 위원이 동의하였음.

○ 준비된 회의 자료를 통해 회의 진행 일정, 등록금 인상을 법정한도(최대 1.5%), 대학현황(학제, 학생현황, 교원현황, 최근 등록금 책정 및 등록금 수입현황 순), 2016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, 2017년 예산운영 방향을 설명함.

3) (변○○위원장) 이○○학교대표위원의 설명 후 각 위원의 발언을 요청함.

○(조○○교수대표위원) 등록금 인하가 국고사업과 연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, 교육부의 고시는 등록금 인상(1.5%)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지만, 실제 인상할 경우 재정지원 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는지,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질의함.

○(변○○위원장) 교육부 고시에는 최대 1.5%의 인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, 실제 인상될 경우 국가장학금, 재정지원사업 등 국고사업 참여가 불가하거나, 사업 선정 평가시 불이익이 발생함.

○(조○○교수대표위원) 교원입장에서 지난 수년간 등록금 인하 및 동결에 따른 인건비는 동결된 상황이며, 물가인상을 등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인하되었음. 등록금 인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후 인건비 인상을 고려하여 주었으면 함.

4) (성○○교수대표위원) 등록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, 인건비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민감한 사안임으로, 고려할 부분임. 제시된 2017년 예산 운영방향이 재정여건 등을 볼 때 실천 가능한지도 우려스럽지만,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함에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결정이 필요할 것임.

5) (변○○외부전문가위원) 교육부에서 공시한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인 1.5%를 인상할 경우에도 교육부의 제재가 이루어지는지 질의함.

○(변○○위원장) 공식적인 제재는 없으나 실제로 불이익(장학금, 재정지원사업 등)이 발생함.

○(이○○학교대표위원) 국가장학금 II유형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이 인상될 경우 참여가 불가능함.

○(변○○외부전문가위원) 등록금 인하를 희망하는 학생대표와 인건비 인상을 희망하는 교수대표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, 등록금 1.5% 인상과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와의 산술적 비교가 가능하다면 검토를 통해 교수 및 학생 모두에게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.

6) (황○○외부전문가위원) 대학과 학생들의 의견은 상반될 것임. 다년간 등록금 책정 결과를 보면 최선의 등록금 책정결과는 동결 또는 소폭의 인하였음. 대폭 인하시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우려됨. 향후 위원회가 진행될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동결 또는 소폭 인하로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함. 「2016년 지방대학 육성사업」과 관련된 내용 중 지역대학지원에 대한 계획은 있었지만, 예산지원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였음. 이러한 상황은 결국 대학과 학생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임.

- 7) (김○○학생대표위원) 2012학년도 등록금 5.2% 인하와 같이 대폭적인 인하가 아닌 0.1% ~ 0.2%의 인하는 학생들로서는 현실적인 등록금 인하로 인정하지 않는 인하율이었고 인상에 대해서는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함.
- 8) (우○○학생대표위원)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하를 목표로 회의에 참여할 것이며, 대학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여 공정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대표의 요구자료에 대한 제공이 필요함. 또한 현재 재정상황을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투명한 예산자료를 요구하겠음.
- 9) (이○○학생대표위원) 등록금 책정은 학우들에게 민감한 부분이며,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교육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등록금 인하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타당성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것임.
- 10) (변○○위원장) 학생대표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자료를 기획처에서 제공할 것임. 지난 7년간의 등록금 인하와 동결로 인건비도 동결되었고, 이는 대학재정의 어려움이 반영 되어있음. 학생 대표도 합리적인 선에서 자료를 요구할 것과 기획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조율이 된 상황에서 차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함.
- 11) (박○○학교대표위원) 매년 등록금 동결과 인하로 인해 대외적으로 국가장학금, 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지만,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학운영 방향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요청하며,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.
-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2017년 2만 2천명, 2018년 3만 2천명 등 대학 진학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수요는 수도권, 등록금이 저렴한 국공립대학, 취업에 특화된 대학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일 것임.
 - 원대한 교육철학과 목표가 있는 대학으로의 성취를 이루는 등 우리 대학이 발전 하더라도 외부적인 요인으로 미충원이 발생될 수도 있는 상황임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임.
 - 현재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그동안 적립해둔 적립금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,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여 적립금을 비축하여야 할 것임. 당장 2017년 등록금 동결, 인하에 대해서만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판단도 중요하므로 대학과 학생 모두가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함.
- 12) (변○○위원장) 학생대표가 요구 자료를 통해 예산구조에 대한 확인과 이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차기 회의가 개최 되었으면 하며, 기획처에서는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함. 이상으로 회의를 마침.

5. 차기(2차) 회의는 2017년 1월 10일(화) 11:00분에 개최하기로 함.

[붙임] : 1차 회의자료 1부.